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시 잔여량 취소 근거 마련〉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37호)

2025. 8.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시 잔여량 취소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8
1. 배출권거래제 제도 변화	8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31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의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무상할당량 대비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환경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지급한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음.

이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법령에 따른 감소량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정부로부터 받은 ‘공짜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막대한 횡재이익을 낼 수 있었음. 이로 인한 포스코는 무상할당 배출권 판매로 31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Ⅲ. 검토의견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시 잔여량 취소 근거 마련

개정안은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권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생략) 1. 2. (생략) 3.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u>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 <u>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15이상으로 감소한 경우</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할당 또는 추가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44호) 제29조제3항3)에 따라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배출권 할당을 취소할 수 있었음.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포스코의 경우 2022년 한남노 태풍으로 인한 시설 가동 중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지만, 그 감소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부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권을 취소할 근거가 미비하였고, 포스코는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여 이익(311억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제기⁴⁾된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1.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3.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4) 경향신문, ‘정부,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권 550만톤 회수 못했다’, 2023.10.10.

바 있음.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5년 2월 7일 개정함 바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4항⁵⁾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에는 감소 비율에 따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하여 할당이 취소된 사례는 연평균 1,677만 KAU(Koeran Allowance Unit,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기준으로 함)이고, 업황 등에 따라 연도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1.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3.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배출량 50% 이상 감소에 따른 할당취소량]

(단위: KAU)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6.*	연평균
할당 취소량	8,069,010	17,995,720	17,745,328	23,301,477	-	16,777,884

주) KAU25에 대한 할당 취소는 2025년 배출량이 확정된 2026년에 진행
자료: 환경부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동실적의 감소(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 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감축노력 없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사례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기업의 생산량이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무상할당량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생산량 변동은 2년간의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다만,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권 시장 현황, 경기변동 등 급변하는 상황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수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율방식⁶⁾이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③ 법 제17조제1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⁷⁾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533

항제3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7) 대한상의 및 주요업종별 협회에서도 할당취소 기준을 법률에 규정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제도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참고1

배출권거래제 제도 변화

구 분		1기('15~'17)	2기('18~'20)	3기('21~'25)
운영	할당업체	525개 업체	591개 업체	684개 업체 (現 818개)
	ETS 비중 (커버리지)	67.3%	70.1%	73.5%
	배출허용총량 (연평균)	563백만톤	592백만톤	607.1*백만톤
유상 할당	비중	0% (전부 무상)	3%	10%
	업종	-	26개 업종	41개 업종
BM 할당	참여비율	7%	49%	62%
	업종	3개 업종 (정유, 시멘트, 항공)	7개 업종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12개 업종 (석유화학, 철강, 건물, 제지, 목재)
시장	시장 참여	할당대상업체	1기 + 시장조성자('19~)	2기 + 증권사('21~) ※ 시장참여자 추가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중(~'25.2)
	이월 제한	무제한 이월허용	순매도 기준 이월 제한 (순매도량의 3배 이내)	순매도 기준 이월 제한 완화 ('23년 1배→3배) ('24년 3배→5배)
	시장 안정화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16)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18)	최저가격 설정 * KAU21 2회, KAU22-23 각 1회
상쇄	제출한도	10%	10% (해외감축 5%)	5%